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지침

2026. 2.

I 개 요

1. 목 적

-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지원금 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자리 창출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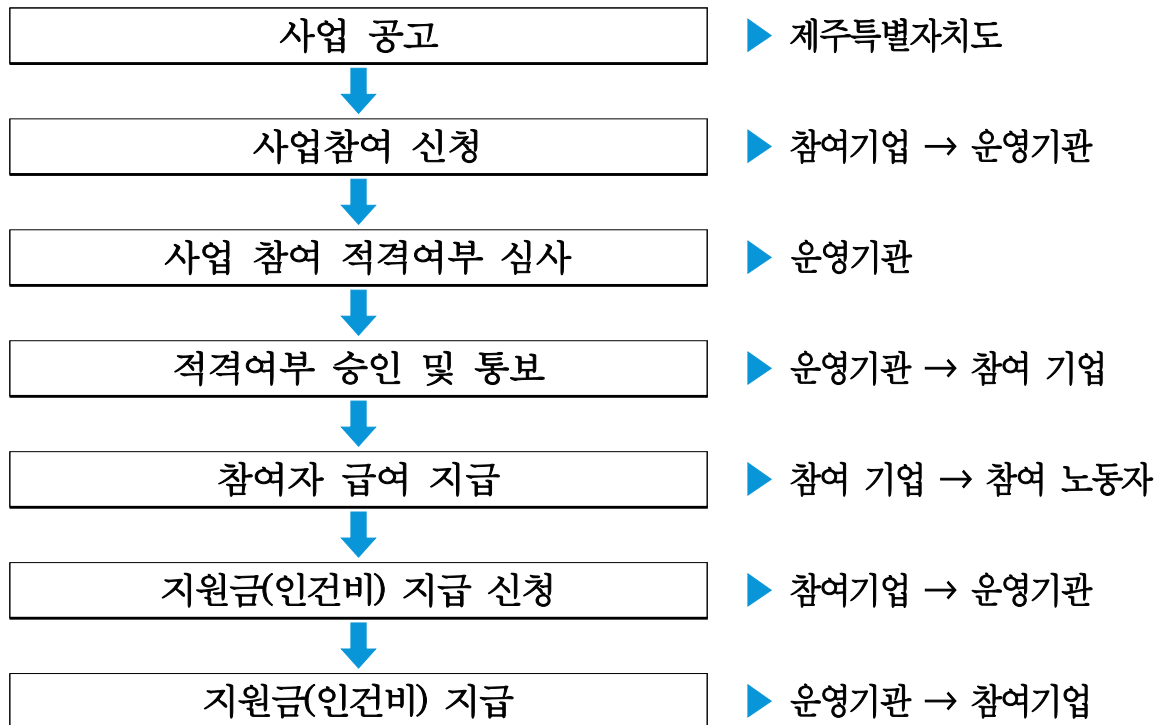
3. 운 영

-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협약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운영
- 이 지침에 기재되지 않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4. 용어의 정의

- 『참여 기업』이라 함은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참여 노동자』라 함은 참여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함
- 『운영기관』이라 함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업무협약서”에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을 말함

5. 추진체계



6. 해석권한

- 동 지침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7. 예산운용

- 동 사업은 단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사업으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노동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지원
- 예산이 소진된 경우,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II 참여기업 공고

1. 공개모집

-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함

2. 공고시기

- 사업 시작 시 1회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고할 수 있음

III

참여신청 및 선정절차

1. 참여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기관에 제출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서류) ·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장 4대보험 체납여부 확인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기간:1년) ※온라인발급: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노동자	· 근로계약서 사본 · 노동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정부24 또는 홈택스) · (우선순위 필요시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식	· 서식1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서식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 ·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기업)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

2.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 (운영기관)
 - 서류 접수 및 자격 확인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참여신청 결과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 전산망 및 유관기관 통한 참여제한기업 조회 후 운영기관 통보

3. 선정결과 통보

- (운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 참여제한기업 조회결과 확인 및 기업 선정
 -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및 지원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지원
- * 1순위 10세 이하 자녀, 2순위 첫 일자리, 3순위 2년 이내 제주 정착

4. 지원금 지급

- (참여기업) 참여 노동자의 인건비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 (운영기관) 참여기업에 지원금 지급

IV 참여요건 및 지원사항

1. 참여기업 자격

가.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필수)

나. 제외대상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함

①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별첨 2)

-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②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자는 가능

-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④ 기타 사치, 투기조장,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참여제한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2. 참여노동자 자격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2026년 참여자격: 1976. 1. 1.~2008. 12. 31. 출생자)

나. 지원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에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또는 최근 1년 이내)
 -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제출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단, 공고일 이전에 휴업신고한 자는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다. 우선순위

-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 * 2026년 기준 2015. 1. 1. 이후 출생자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2순위: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노동자
 - ※ 노동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기간 전체) 제출
 - 3순위: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제주 정착한 노동자
 -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포함) 제출
- 이후 신청서 접수 순서로 선정함

3. 참여심사

- 운영기관은 사업주의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통해 참여가능 여부를 심사
- 운영기관은 참여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V 채용 및 지원내용

1. 채용 시 지원 원칙

- 사업 참여신청 시 참여 노동자는 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참여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주 30시간 이하여야 함
- 참여 노동자는 2025. 11. 1. 이후로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2. 지원내용

- 근로시간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5시간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50만원, 4개월 200만원)

3. 지원한도

- 지원 인원별 최대 4개월 200만 원 인건비 지원
- 기업당 노동자 최대 5인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중도 포기 시 잔여기간 및 인원에 대한 대체 지원 불가

VI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지원금 신청

- 사업주는 참여 노동자에게 인건비 지급한 후 매월 1~10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원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 5>
-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 노동자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 현금 지급 불인정
- 노동자 출근(근무내역) 증빙자료<서식 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 지원금 지급

- 운영기관은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본 사업을 신청한 달의 인건비부터 지원금 지급 가능

VII 지도·점검 및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운영기관은 지도·점검 등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위반행위별 조치기준은 다음과 같음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주의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주의 조치 (미이행 시 경고)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경고 대상은 10일 이내 시정하도록 경고 조치 (미이행 시 약정해지)
 - 위반행위별로 조치기준상 1차 주의 및 2차 경고 대상은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약정 해지할 수 있음

구분	위반행위	조치기준
사업 운영	• 근로자 근무상황 등 관리 부적정	(1차)주의→(2차)경고
	• 근로계약서 급여내용과 다르게 지급	(1차)주의→(2차)경고
	• 중도포기자 발생 미통보	(1차)주의→(2차)경고
지원금 부정수급	• 지원금 허위 부정 청구	- 동 사업 지원 중단 - 부정수금액 전액 환수
기타	• 기타 운영지침 및 지원약정 위반 • 지도점검시 요구 불응	(1차)주의→(2차)경고

<서식 1>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장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적격통보 수신 가능한 번호로 기재)
		이메일	
사업장 주소			

참여 노동자 고용 현황

노동자 성명		근무기간 근무요일	예) 2026. 3. 1. ~ 6. 15. 월,수,금 : 10:00 ~ 17:00
휴대전화		근무시간	(주 00시간 근무)
근무지 주소			

※ 지도감독

- 고용기간 중 운영기관은 해당 근무자의 실근무현황 등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협조하여야 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사업주 임금체불, 폐업, 관외 이전, 최저임금 미만 지급, 4대 사회보험료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원 제외됨

- 기타 공고문 및 주의사항 등 해당 내용 미숙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사업주 본인에게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수령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 작성된 정보입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등 유관기관에 자료가 제공됨을 동의합니다.

- 귀하의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활용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동의일로부터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본 사업의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위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제출시 첨부서류

동의서	·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대표자(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신청 청년 노동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필수)(□) ·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고용종료)(온라인발급-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노동자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포함)(□) ·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서식 2>

지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격 여부가 아래 내용과 같으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소비 ·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 여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동일 근로자로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 수령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관리 ·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사업 참여 선정 · 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지역 내 고용 발전을 위한 일자리 통계 목적으로 활용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기업용)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업명 _____ 대표 _____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_____ 성명 _____ (서명)

<서식 4> 노동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노동자용)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 공 받 는 자	제 공 목 적	제 공 항 목	보 유 기 간
지방자치단체,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참여대상 인적사항, 참여 내역 등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보존 연한 경과 시까지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일 일

본인 성명 : (서명,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사 업 장 주 소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임금 지급내역					지원금 신청총액		원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 월(月)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주)	근로일 (일)	근로시간 (시간)	임금 지급액	지원금 신청액(원)	비 고	
위와 같이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_____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첨부 서류	1.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2. 노동자 급여지급 확인서류(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3. 노동자 출근(근무내역) 증빙자료 (서식6)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서식6>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출근부							
				월 일	출근	퇴근	근무시간
성 명: 기 업 명: 근무기간: 주 근무시간: 주 00시간 월 근무시간: 총 00시간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월 일	출근	퇴근	근무시간	21	:	:	
1	:	:		22	:	:	
2	:	:		23	:	:	
3	:	:		24	:	:	
4	:	:		25	:	:	
5	:	:		26	:	:	
6	:	:		27	:	:	
7	:	:		28	:	:	
8	:	:		29	:	:	
9	:	:		30	:	:	
10	:	:		31	:	:	
				월 총 근무시간:			

참여 노동자: 성 명 (인)

대표/담당자: 성 명 (인)

※ 노동자 및 기업체 담당자는 출결 확인, 직접 서명

※ 노동자의 출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근카드(전자적 방법 포함)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별첨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 2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악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구분	내용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营业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

구분	내용
	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营业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营业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